

의안번호	2204269
의 퇴 인	이수진의원
회 답 일	2024. 11. 4.
추계번호	24D4022

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2조의2 신설 (청년에 대한 영향평가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 청년 고용·능력개발·복지 등 청년의 권익에 미칠 영향을 분석·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·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의 분석·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, 국가의 중장기 계획 및 중요정책이 청년의 권익에 미칠 영향을 분석·평가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	의무·재량 규정
2	안 제24조의2 신설 (청년기본소득 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 촉진을 위하여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하여야 함 청년기본소득의 지원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대의 청년으로 하고, 지급액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「통계법」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등 사회적·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함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지급하며, 지급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고,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으며, 그 밖에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	의무·재량 규정

Ⅱ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2조의2 신설 (청년에 대한 영향평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	안 제24조의2 신설 (청년기본소득 지원)	

2. 상세 사유

- (청년에 대한 영향평가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요정책이 청년 고용·능력개발·복지 등 청년의 권익에 미칠 영향을 분석·평가하고,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의 분석·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제정·운영하며,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분석·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
 - 개정안에 따른 중요정책이 청년의 권익에 미칠 영향을 분석·평가하는 경우 연구용역비 지출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, 현 시점에서 분석 평가 방법, 절차 등 세부사항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
- (청년 기본소득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
 - 다만, 개정안은 지원대상 연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, 지급액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비자물가지수 등 사회적·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,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 청년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음

- 서울시의 경우 30,000명을 대상으로 월 50만원,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있고, 부산은 2,000명을 대상으로 월 50만원, 최대 6개월 지급, 경기도는 15만명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(최대 100만원) 지급하고 있음
- 이에 따라 이들 사업과의 중복 등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지급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 추계에 한계가 있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여은구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여은구	02-6788-4673	cecil@assembly.go.kr